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69

발의연월일: 2021. 5. 25.

발 의 자:문진석・이형석・윤재갑

홍성국 · 조오섭 · 이정문

홍익표 · 김병욱 · 서영석

송갑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 구입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함으로써 농산물 거래과정에서 세금경감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제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주재료가 농산물(찹쌀, 멥쌀, 콩, 팥 등)임에도의제 매입 공제율이 6/106에 불과하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행사나 모임이 제한되어,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 42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 | 윧 |
|--------------------|---|---|
| 1. 음식점업 |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2분의 2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 6 |
| 2. 제조업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 영하는 개인사업자 | 109분의 9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 102분의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 |
| 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 | 액 공제특례) ① |
| 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 | |
|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 |
|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 | |
| 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 | |
| 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 | |
| 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 | |
| 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 |
|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 |
|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 |
|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 | |
| 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 |
|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 | |
| 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 | |
| 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 |
|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 | |
| 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 |
|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 |
| 수 있다. | |

| | <u>구분</u> | <u>율</u> |
|------------------------|---|---|
| | 가.「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 영자 | <u>102분의 2</u> |
| 1 은 식 점 업 | 나. 가목 외의 음식점 을 경영하는 사업 자 중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
| | <u>다. 가목 및 나목 외</u> <u>의 사업자</u> | 106분의 6 |
| 2 : 제조업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 조업 중 떡방앗간 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 | 106분의 6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
| | <u>다.</u> 가목 및 나목 외 의 사업자 |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 <u>102분의 2</u> |

| | <u>구분</u> | <u>율</u> |
|----------------------|--|---|
| | 가.「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 영자 | 102분의 2 |
| 1 으 스 전 업 | 나. 가목 외의 음식점 을 경영하는 사업 자 중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
| | <u>다. 가목 및 나목 외</u> <u>의 사업자</u> | <u>106분의 6</u> |
| 2제조업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 조업 중 떡방앗간 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 | 109분의 9 |
| | 나.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
| | <u>다.</u> 가목 및 나목 외 <u>의 사업자</u> | <u>102분의 2</u>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 102분의 2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